

第16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3.12.19.~12.2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6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개회식277
- II.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79
- III.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85
- IV. 부록
 - 1. 의사일정안293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295
 - 3.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303
 -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심사보고서311
 - 5.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심사보고서31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6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6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번호사조례안
3.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6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번호사조례안(고규강 위원 외 4인)
4.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고규강 위원 외 4인)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신건환 공보감사
담당관,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은 시·도

교육청 우수사례발표회 참석으로,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충북체육상 시상식
참석으로, 김진성 총무과장과 조계환 학
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혁신팀 관
련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교육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및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같은날 고규강 교육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2월 10일 공고 제2003-13호로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6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신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은 같은날 집행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6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산회 후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고규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눔)

● 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및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각각 제정하고자 본 위원 외 네 분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 해석과 각종 의안심의 시 필요한 경우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발생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기간 2년의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으로 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기타 제정안과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

[제161회-제1차 본회의]

으로써 학교급식을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향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학교급식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방법을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를 정하여 학교급식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위탁급식을 학교직영 급식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원대상 학교장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배

식과정에 이르기까지 참관하도록 하였고, 교육감이 지원대상 학교와 식재료 공급자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제정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1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규강 교육위원 외 네 분의 위원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번호사조례안 및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기수 위원님과 진옥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2월 20일 (토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고규강 위원 외 4인)
2.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고규강 위원 외 4인)

(11시 00분 개의) 다.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은 심사보고서가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송대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송대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교육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고규강 교육위원외 4명의 교육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12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1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의 교육 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 의안심의 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 이내로 하여 의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또한 고문변호사 자문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정하고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기타 고문변호사 해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유 및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축수산물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축수산물을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충청북도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로써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

시된 초·중·고등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우수농축수산물 을 사용한 학교급식종합지원 계획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또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우선사용 및 현행 위탁급식학교 를 직영급식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며 기타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조문 중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 농산물 사용시 상위법령 저촉의 문제가 제기되어 우수농산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노력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로 하여, 교육감은 매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송대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송대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일

말씀하세요.

진위원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진옥경 위원

번번히 학교급식조례로 인해서 여러번 나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심사보고대본에는 나와 있지만 보고서에 자세한 과정이 들어 있지 않아서 유감의 뜻을 표하느라 나왔습니다.

이번 제4대 도교육위원회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안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우리농산물을 지키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의 학교급식조례입니다. 저는 이러한 급식조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을 거부하는 하는 뜻에서 참석하지 않았음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규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고규강 위원

동료위원인 진옥경 위원이 여기 나오셔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조례는 대한민국에서 타 시·도에 지금 올라간, 상정된 학교급식조례안 중에서는 가장 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경 위원이 바라는 우리 급식운동중 청북도본부에서 저희들에게 청원했던 도지사에 관련된 내용을 진옥경 위원이 그것을 우리에게 청원했다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 어디다 제출할 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고의 발상으로 우리 교육위원들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은 조례를 또는 모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심의기관으로써 교육위원의 자질이 법령의 범위에 들어 있느냐 또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모르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모든 동료 위원들에게 또는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교육관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무지를 알리게 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들도 공부를 더 해서 이러한 일이 추호도 발생되도록 하는 일이 없고 또한 공인으로서 교육위원인지 또는 그러면 민간단체의 일원인지 이결 분간 못하는 교육위원은 좀 자숙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발상을 둔 것인지 또는 조례안에 어느 항에 몇 조에 해당되는 건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민간단체나 급식

운동추진본부에서 밝혀야 되고. 민간단체에 제가 토론자로 나갔을 때도 상위법 어디 어디 몇 조 몇 항에 근거를 해서 위법이니 이런 것을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급식운동추진본부에서 자문위원으로서 자문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해 놓고 어디다 제출할 것도 모르고 어느 것이 상위법에 어긋났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추진운동본부에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침으로써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3회의 회의와 60일간의 회기동안 37건의 의안과 47건의 일반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5회에 걸쳐 교육위원 발의로 회의를 소집하여 교육위원 발의 조례 3건 및 결의문 2건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회의 교육유관단체 의견수렴과 23회에 걸친 의안관련 현장방문, 10회의 학교운영위원회지역협의회 임원과의 대화, 2일간의 교육위원 연찬, 13회의 전국 교육위원회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참석, 전국체육대회 참관 격려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2일 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 조례 제정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충청북도교육의 발전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161회-제2차 본회의]

해결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면서 상호간에 신뢰와 존중 그리고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직원께도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1만 6천여 교

육가족, 150만 도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갑신년 새해에도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7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목,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번호사조례안심사보고서(별첨 4)
- ▶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심사보고서(별첨 5)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2.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이 기 수 최 석

위 원 진 옥 경 진 옥 경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61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12. 19. ~ 12. 20.(2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2월 19일(금)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6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3. 12. 19. ~ 12. 20.(2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제안설명)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12월 20일(토)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61-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 변호사조례안

발 의 자	고규강 교육위원외 4명
발의년월일	2003. 12.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조례안

의안 번호	제161-1호
----------	---------

발의년월일 : 2003. 12. 10.
발 의 자 : 고규강 교육위원외 4명

1. 제정이유

-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의안 심의시 필요한 경우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 또한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촉기간 2년의 고문변호사를 2인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함.(안제2조)
- 고문변호사 자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함.(안 제6조)
- 사건처리부를 비치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함.(안제7조)

3. 제정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관계규정 : 해당없음
- 예산조치사항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각종 의안 심의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의장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고의로 기피한 때
2.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는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사건처리부)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처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 건 처 리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 퇴 년월일	의퇴내용	회 신 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의안심사						
법령해석						
기 타						

고문 변호사조례 타 시·도의 규정 형태(참고자료)

검토부문	발의안 규정	타시·도의회 규정	비고
조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충남, 전북) ○ 부산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대전, 울산, 충북, 경남, 제주) ○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보호사에 관한조례 ○ 인천광역시의회고문보호사에 관한조례(광주) ○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 경상북도의회고문보호사운영조례 ○ 전라남도의회입법·정책법률고문운영조례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명에 따라 기의 비슷함. 	
제2조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권자 : 의장 ○ 위촉대상 : 취업중인 변호사 ○ 위촉인원 : 2인 이내 ○ 위촉기간 : 2년 재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10인이내/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변호사 등 ○ 6인이내 : 경기, ○ 5인이내 : 충남, 경북 ○ 4인이내 : 전북 ○ 3인이내 : 광주, 전남 ○ 2인이내 :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 1인 : 대구, 대전, ○ 위촉기간 -2년: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경기,강원,전북,경북,경남,제주 -1년:인천,광주,충북,충남,전남, 	
제3조 (지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변호사의 지문 사항 1.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각종 의안 심의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 의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의회 - 시·도 : 광주 - 의장 : 경기 	

검토부문	발의안 규정	타시·도의회 규정	비고
제4조 (소송대리 인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교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 위임 : 교문번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도 : 규정하지 아니함. 	
제5조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촉권자 : 의장 ○ 해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를 고의로 기피한 때 2.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별 기의 비슷함. 	
제6조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 지급 (출석수당 지급 기능) ○ 수당지급일 : 매월말일(그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범위 :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 예산의 범위 내 200,000원 이하 : 인천, 충남, 전남, 경북, 제주 - 예산의 범위 내 150,000원 이하 : 대구, 광주, - 200,000원 이하 : 경남 - 시·도 조례 기준 적용 : 울산,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수당 → 보통 규정
제7조 (비치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처리부 비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처리부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치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비치 : 서울, 경기, 전북 	
제8조 (시행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칙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 경북, - 미규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 	

고문변호사 관계규정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회	○	○	○	○	○	○	○	○	○	○	○	○	○	○	○	○
규칙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회	○	○		○	○	○	○	○	○	○	○	○	○	○	○	○
규칙	○		○	○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					○				○	/						
청	○	○	○	○		○	○	○		/	○	○	○	○	○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	/	/	/	/	/	/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	/	/	/	/	/

□ 시·도의회 조례명 유형

-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충남,전북)
- 부산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대전,울산,충북,경남,제주)
-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 광주시의회에 담재
- 인천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광주)
-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 전라남도의회입법·정책법률고문운영조례

□ 시·도교육청(조례/규칙) 제명 유형

-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고문변호사조례
-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법률고문운영규칙(전북)
- 부산광역시교육감고문변호사운영및소송사무처리규칙
-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칙
- 인천광역시교육감을당사자로하는소송위임에관한변호사의보수규칙
-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고문변호사위촉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칙(울산,전남)
- 경기도교육감고문변호사운영규칙
-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무처리규칙
- 경상북도교육감고문변호사위촉에관한규칙
- 경상남도교육·학예쟁송사무규칙
- 제주도교육감고문변호사규칙

(별첨 3)

의안번호	제 161 - 2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12. . (제 회)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발 의 자	고규강 교육위원외 4명
발의년월일	2003. 12. 10.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의안 번호	제161-2호
----------	---------

발의년월일 : 2003. 12. 10.

발 의 자 : 고규강 교육위원외 4명

1. 제정이유

- 학교급식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되도록 임무를 부여(안 제4조)
- 지원방법을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를 정하여 학교급식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 현행 위탁급식을 학교직영 급식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 지원대상 학교장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배식과정에 이르기까지 참관하도록 함(안 제12조)
-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3조)
-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제정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관계규정 : 붙임과 같음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②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요청하여 지원을 받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급식대상학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을 통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 2인과 위촉직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학부모단체
2. 교사단체
3. 농민단체
4. 시민단체
5. 충청북도영양사회
6. 식품영양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학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학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학기당 지원금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급식의 직영화)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년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급식 참관인 구성) ①지원대상학교의 장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한다.

②참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식재료 검수과정
2. 조리과정
3. 식재료 및 시설설비 위생관리
4. 배식과정

제13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가 공급하는 식재료 및 지원대상학교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할 수 있고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학교가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관 계 규 정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①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학교급식 실시 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되, 미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급식학교”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들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별첨 4)

(제16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2003. 12.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년 12월 10일, 고규강 교육위원외 4명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9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12월 1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위원 고규강)

가. 발의이유

-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 의안 심의시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 또한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촉기간 2년의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함.(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자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함.(안 제6조)
- 사건처리부를 비치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함.(안 제7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 해석과 각종 의안 심의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 이내로 하여 의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또한 고문변호사 자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기타 고문변호사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12. 20.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현



간사

김남훈



위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별첨 5)

(제16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2003. 12.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년 12월 10일, 고규강 교육위원외 4명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9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12월 1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위원 고규강)

가. 제안이유

- 학교급식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되도록 임무를 부여(안 제4조)
- 지원방법을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를 정하여 학교급식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 현행 위탁급식을 학교직영 급식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 지원대상학교장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배식과정에 이르기까지 참관하도록 함.(안 제12조)
-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3조)
-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학교급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충청북도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우수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또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및 현행 위탁급식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며, 기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으로, 조례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만, 조례안 조문중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농산물 사용시 상위법령 저촉의 문제가 제기되어 우수농산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노력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년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년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여 교육감은 매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음.

6. 수정안 주요내용

가. 수정이유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교육감의 학교급식 직영 전환 노력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안 제11조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년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년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12월 20일

제안자 : 이기수 교육위원외

1. 수정이유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교육감의 학교급식 직영 전환 노력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1조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를 제1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제1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제2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1조(학교급식의 직영화) <u>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1조(학교급식의 직영화) ①<u>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u>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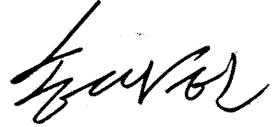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12. 20.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간사

김남훈



위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第16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327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343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11시 15분

議事日程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11시 15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

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송대헌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우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본 조례안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16분)

● 위원장 송대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김남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남훈

위원장님을 도와 간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7분)

● 위원장 송대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11시 18분)

● 위원장 송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고규강 위원님께서서는 추가로 보충설명하실게 있습니까?

● 고규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규강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순서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같이 논의를 하나요? 아니면 조례안별로 하나요?

● 위원장 송대현

지금 조례안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병합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같이 올렸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하실 모양이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조례안의 관련문건을 보았습니다. 전국의 상황이 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송대현

고규강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죠.

● 고규강 위원

전국에는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것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외부의 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들과는 다 논의가 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셨습니까?

● 고규강 위원

없었어요.

● 진옥경 위원

지난번에 저희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적에 저희가 외부 김재중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고규강 위원

있었어요.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된다는 그런 자문이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주민청원을 기각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 변호사의 자문이 아직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외부자문이 합당하다는 이유가 지금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시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고규강 위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진옥경 위원

학교급식 주민발의, 주민청원안이 있었

죠.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재중 변호사한테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거의 같은 내용의 안이 지금 12월 18일날 어제 경상남도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를 수정발의하고 올라간 것이 적법하다는 것인데, 김재중 변호사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타당치 않다고 자문을 받으시고 지금 그에 준해서 기각을 내리셨으면서, 지금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들 동의를 하셨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연내에 제정하기 위해서 도의회까지 다 통과한 경남의 안을 볼 때 변호사 자문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발목을 크게 잡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것을 기각해 놓고 변호사조례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서 동의하셨는가요?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핵심을.....

이기수 위원님 말씀을 하시죠.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먼저 급식조례에서 어느 위원이 어느 변호사가 어떻게 답변했던 간에 이 사안을 갖고서 단독적으로 해 갖고

서 처리를 할거나 안할거나를 판단해야지, 과거에 어느 변호사 특정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다든지 이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그런 거니까 이 사안을 놓고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갖고 따지는 얘가지, 과거 어느 변호사가 이거 위촉했다고 해도 좋은 제도지만 위촉변호사 때에 따라서는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서 좋은 제도를 갖고 그걸 문제삼아 갖고서 전체적인 걸 지연시킨다면 문제가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뒤에 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사안만 갖고서 논의해야지 이게 되는거지 한없이 이거 그러면 1년전 며칠전 얘기하고 그 다음 1년전까지 얘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도 이게 통과시킬 수 없는 얘기고, 또 법의 운영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촉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정확치 않은 경우도 혹여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조례의 제정과 연관시켜 갖고서 이걸 지연시키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은 말입니다. 이 사안 단독사안만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옥경 위원님 계속하시는데요. 지금 핵심의 요지를 잘 아시죠.

● 진옥경 위원

아니 이것이 시점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얼마 전에 주민발의안을 적법하지 않은 외부변호사의 자문을 첨부해서 우리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일한 사안을 경상남도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변호사 없이 그것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외부조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변호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 교육위원회 내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요번이 이것을 우리가 의결할 적에는 도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내용에는 예산들도 들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 그대로 또 낭비하는 전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우리 교육위원회가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결국 질의의 요지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급식에 대한 것이 아니죠. 문제핵심이.....

● 진옥경 위원

바로 직전에 그것을 변호사.....

● 위원장 송대헌

제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의핵심은 두 안건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핵심을 급식이 아니고 지금 질의요지는 고문변호사조례에 대한 말씀이시죠.

● 진옥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그렇죠.

● 진옥경 위원

핵심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례를 준해서 지금 외부에서 이것을 저희가 이 시점에 결의를 한다면.....

● 위원장 송대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급식하고 결부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없다고 하시는 그런 요지의 질의말씀 같아요.

그 예를 든 것이 뭐냐 하면 먼저 급식 관계 때에 김재중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도 별로 타당치 못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제도가 타당치 않다는 그런 핵심의 요지시죠.

● 진옥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고규강 위원님 그 부분이요. 질의의 핵심을 아시겠죠. 말씀하세요.

● 고규강 위원

경상남도에 청원한 거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청원한 거하고는 질적으로 또 내용상으로 틀립니다.

뭐냐하면 충청북도의 조례안을 청원한 거는 도지사의 조례를 청원한 것이고 경상남도에 청원한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와 믹스해서 청원했습니다.

분명히 급식추진운동본부에서 질의서에도 도지사의 조례로다 청원했다 이렇게 질의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필요한 조례안인지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지 분간 못하고 청원했다는 것이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계속 그 말씀이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 지금 이 부분을 누구에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를 전국 최초로 지금 유지하는 조례를 첫 조례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고규강 위원

예. 맞아요.

● 위원장 송대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진옥경 위원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말씀하시죠. 진옥경 위원님.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회 내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정직한 뜻이 보이지만 사실은 최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여건 탓만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고규강 위원

진위원장 하신 말씀에 답변을.....

● 위원장 송대헌

질의가 아닌데요.

고규강 위원님 하시죠.

● 고규강 위원

우리 교육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인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교육위원님들이나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역량이 넘쳐흐르는 역량이 있는 이러한 교육위원회라고 저는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를 모독하고 동료교육위원들을 자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

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위상을 추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앞으로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대헌

한 가지 주의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나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위원장님, 사안이 두 개인데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는 아무도 안하시네요.

다른 분은 안계십니까?

● 위원장 송대헌

없습니다.

없다는 걸 다 얘기를 했어요.

● 진옥경 위원

학교급식조례도 없으시다고요?

● 위원장 송대헌

예.

● 진옥경 위원

아니 이렇게 이런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실 작정이십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급식본부에서 나온 반대성명서 보셨습니까?

● 위원장 송대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하십시오.

누구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진옥경 위원님.

● 진옥경 위원

줄속안 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특히 우리농산물 규정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이렇게.....

● 위원장 송대현

구체적인 질의를 하세요.

● 진옥경 위원

아 그러면 타 시·도의 조례안을 다 비교해 보셨으면 아실텐데 어찌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실 작정이십니까?

● 위원장 송대현

질의하시는 핵심이 뭐니까? 지금 핵심을 질의하세요.

● 진옥경 위원

연구도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송대현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의 핵심을 하시면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타 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저께 경상남도에 교육상임위에 통과한 내용도 우수농산물이 아니라 우리농산물입니다. 이것은 지원주체

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관철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이 어디가 기본 주체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도의회에서 경남도의회에서 어저께 수정가결해 가지고 우리농산물로 해가지고 다 통과를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도 모르시면서 우리는 이걸 우수농산물로 하고 단서 조항하나도 들지 않은 전국에서 가장 미약한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송대현

됐습니까?

고규강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우리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라는 거는 현 오늘에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되면 오늘 현행법을 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현행법에 우리농산물이 GATT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인적자원부에 올라가서 다시 재의요청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는 우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음에 법이 개정되면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 진옥경 위원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조례입니다. 이것을 왜 만듭니까?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개선의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수농축산물 정도로 해 가지고는 지금 현행 급식을 개선할 수는 있는 아무런 단서 조항이 덧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 고규강 위원

뭐가 개선이 됩니까?

우수농산물하고 우리농산물하고 개선요점의 취지를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도 우리농산물로 바뀌야 되고요.

● 고규강 위원

뭐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뭐가 개선이 안 된다는 내용을 얘기해주셔야죠.

● 진옥경 위원

예. 수입산 재료들을 차단할 수 없다는 거죠. 수입산도 우수농산물이 있기 때문이요. 요새는.....

● 위원장 송대현

다시 한번 조금만 조용히 하세요.

한번씩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하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애

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서 더 이상 우수농산물에 대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어떻게 질의를 그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지 문제인데 단 1분에 이것을 처리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대현

질문하시라니까요. 기회주니까 정리하세요.

● 진옥경 위원

우수농축수산물이라고 해서는 수입 급식재료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농민 보호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수입농산물을 물밑 듯이 들어오는 농산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 정도가지고서는 어렵도 없습니다. 지금.

콩도 유전자조작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유기농으로 중국에서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워가지고 시판되고 있는 입장에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하고 있는데, 뒤늦게 제정한 조례가 가장 있으나마나한 이런 우리농산물을 하나도 실질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하나도 막지도 못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고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대헌

다 했습니까? 질문요.

● 진옥경 위원

예. 저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전국에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됐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고규강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 고규강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그렇게 하시죠.

● 고규강 위원

우리농산물이라고 그랬을 적에 우리농산물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식재료나 또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이고 싶을 적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 진옥경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 고규강 위원

어쩔 수 없이?

법에 정해진 걸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까?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그 몇 % 때문에 그 나머지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도 막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고규강 위원

막지 않는게 아니고 답변을 드릴게.

우수농산물하고 우리농산물하고 차이가 없어요.

● 진옥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 고규강 위원

왜 전국적인 거는 왜 따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 위원장 송대헌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 고규강 위원

뭐냐하면은 우수농산물이라 하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은 냉동이 됐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부패되지 않는 이러한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함이 들어가면 전부 우리농산물로 들어갑니다.

● 진옥경 위원

안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각 시·도가.....

● 고규강 위원

뭐가 어떤 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 위원장 송대헌

저 진옥경 위원님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세요. 답변들은 다음에 중간에 자르지 마시고 더 답변하실 게 있으면 더 답변하시고.

● 고규강 위원

답변할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네.

● 진옥경 위원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름부터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떡해서든지 실질적인 우리농산물을 수급을 우리 급식에다 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경남은 지금 우리농산물로 가고 있고 단, 단서조항을 여러 가지 붙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GATT나 이런 것의 판단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농산물로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신선함이라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막아냅니까?

● 고규강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고 타 시·도고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해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멈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 고규강 위원

하나하나한 조례라니 너무 무식한 말을 하시네. 하나하나한 조례라니.

● 진옥경 위원

이게 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급식 본부에서도 지금 졸속안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 고규강 위원

공인으로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합법적인 법에 맞는.....

● 진옥경 위원

합법이라구요. 합법을 가장한 무성의죠.

● 고규강 위원

법을 위반하는 공인이.....

● 진옥경 위원

이런 농민들을 하나 지켜내지도 못하는 정도의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조례안을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

말 유감스럽습니다.

● 송대헌 위원

고규강 위원님 그치시고요. 진옥경 위원님 그치시고 성위원님 위원장의 발언권 받아 가지고 하세요.

● 진옥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도민들이 아주 좋아 하는 교육위원회 날로 발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민들은 이 조례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좀 그쳐주시고 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교육위원 여러분들.....

● 위원장 송대헌

그쳐주시고 성위원님 발언하세요.

● 성영용 위원

들으실지 안들으실지 몰라도 지금 진옥경 위원님 말이죠. 찹쌀 한말이 우리 것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가격을.....

● 진옥경 위원

그것도 발언권 얻어서 하시는.....

● 성영용 위원

얻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또 거기에 비례해서 밀이 얼마이고 쌀이 얼마이고 세 가지만 대답하세요.

● 진옥경 위원

그럼 뭐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그냥 수입으로 하십시오.

● 성영용 위원

아니 그게 얼마인가 그냥 가격을 묻는 거예요. 가격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농산물과 수입산과를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답변하세요.

● 진옥경 위원

저는 수입산을 가능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을 먹고 또 한살림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을 저는 가능한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이 여기가 충청북도 농도입니다. 그럴 때에 농민들의 지금 국회 송광호 위원 저기에 들어가서 FTA도 지금 막아내라고 지금 점점 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단서조항도 없는 실질적인 우리농산물이라는 부분까지도.....

● 성영용 위원

여보세요. 제가 묻은 것은 세가지 값만 얘기하라는 거지 탄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예요.

● 진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입니다. 그것을.....

● **성영용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아야지.

● **진옥경 위원**

예. 하여튼 많이 아십시오. 그렇게 많이 알아서 이런 조례가 나오니까?

● **위원장 송대현**

위원장 직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에 대한 질의가 있고 고규강 위원님의 답변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여기 계시는 조례를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또 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직영운영원칙에 대해서 원안에 왜 후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대현**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직영원칙에서 두 항이 있었습니다. 충청본부들과 간담회에서 두 개의 항으로 수정해서 보냈는데 최종안은 하나로 뭉뚱 그려지면서 교육감이 도교육위원회에게

보고하라는 단서조항이 빠졌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예. 말씀하시죠.

● **고규강 위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완전 충청북도의 직영급식이 될 적에도 계속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다 직영급식으로 전환됐는데 계속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경남조례안에는 들어있어서 도의회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속개후 진옥경 위원 임의로 들어오지 않음)

● 위원장 송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이기수 위원님이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제11조 학교급식직영화에는 원안에는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조항을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1조제1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를 제1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위원회 모든

(12시 2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김남훈,
위 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2명

의사국장 이상기, 의사과장 김용환.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2. .

위 원 장

송 대 현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고
'03.12.19. (금)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